

※ 동 문안은 표준문안으로 투표소 및 시군구 선관위 안내번호 등 지자체 판단에 따라 추가 가능

<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외출 안내 표준문안>

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 별표2에 따라 ‘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’를 위한 외출이 한시적으로 허용됨을 알려드리니, 외출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대 상 자 : 입원치료·자가치료·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·시설격리 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(이하 격리자등) 중 ‘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’ 선거인
- 외출시간 : 3. 8일(수요일) 11시5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며,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
- 이동방법 : 도보, 자차, 방역택시 등(대중교통 이용 금지)
- 주의사항 : 마스크(KF94 또는 동급 이상) 상시 착용, 투표장소로 직행,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, 투표시간 내에 투표소에 도착하여 투표 사무관계자 등의 안내에 따라 투표소 방역사항 준수
- 투표종료 후 :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즉시 귀가

※ 투표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으로 투표 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,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